

대의제-촛불집회의 충돌과 한국식 민주주의

2008.8.12 | 김종철_요크대 박사과정

목 차

- _서론
- _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란?
- _대의(Representation)의 문제점
- _대의(Representation)의 문화적 특수성
- _결론



<http://saesayon.org>

1. 서론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곡이다. 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 노래를 통해,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의 말을 이명박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권력주체인 국민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OUT"해야 한다. 그래서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주권"과 "이명박 OUT" 구호가 앞뒤로 같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다.

이런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에,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지식인 혹은 정치가들은 비판적이다. 그들은 촛불집회가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정권퇴진" 구호가 한국의 헌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 지식인인 최장집도 촛불집회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와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코자 하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3쪽). 신임 국회의장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6월 3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한다. 민주주의 위기가 선출된 권력이 대중에 의해 꼼짝 못할 때 일어난다면,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통합민주당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대의민주주의체제를 흔들었다고 비난한다.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로 인한 대중과의 괴리는 우리 사회가 걸린 의사소통장애라는 심각한 병의 원인 중 하나다. 몸에 비유하면, 사회가 동맥경화증 같은 병에 걸려 피돌기에 장애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져 언제 졸도할 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식인, 정치가들이 촛불집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본인은 이 글에서 이런 태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이들 지식인에게, 서유럽 특히 영미문화권에서 발생한 특정한 민주주의 형태를, 왜 우리 사회가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 그들에게 대의민주주의는 보편적 정치체제이다. 즉,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이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최장집은 이렇게 말한다.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대표로 하여금 통치토록 하는 체제이다."(같은 글, 2쪽).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러한 등식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제도와 상충되는 촛불집회의 요소는 억제되어야 하는가? 본인이 보기에는, 대의민주주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특수한 문화 혹은 문명사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영미권과는 다른 문화 혹은 문명사적 배경을 갖는 한국의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보편적 대안으로 선협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나름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촛불집회를 대의민주주의의 실패의 결과로 보거나,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혹은 대의민주주의와 상충되는 요소는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적합한 특수한 민주주의적 의사표현 양식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2.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란?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의 개념이 다양한 사회에 수입되면서 그 사회에 맞게 재해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수한 문화 혹은 문명사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대의 개념이 처음으로 민주주의 개념과 만나 발전한 곳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 바로 영국이다. 그래서 이 글은 영국 근대민주주의 사상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사상을 중심으로 대의 개념을 분석하려 한다.

번역어 "대의(代議)"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신 논한다"라는 의미는 영어 Representation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원 뜻에 가까운 번역어는 "재현(再現)"일 것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재현민주주의"라고 번역해야 좀더 원래 뜻에 가깝다. 대의민주주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재현(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을 재현하는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재현이라는 말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도록 하자. 영어 Representation은 라틴어 repraesentare(라틴어 repraesentatio는 이것의 명사형임)에서 비롯했다. 라틴어repraesentare의 원시적 의미는 "결여된(absent) 것을 있게(be present)한다"이다.(스키너, "Hobbes on Representation", 160쪽). 그래서, 스키너에 따르면, 고대에서는 repraesentare가 두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 그 중 하나는 빚을 갚거나 유산을 지불하는 경우를 일컬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지불 받은 경우 결여되었던(absent) 현금이 다시 있게(present)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물체나 사람의 외양을 재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예를 들어, 그림이나 조각에서 어떤 물체를 표현했을 때,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할 만큼 사실적으로 그린 경우를 말한다. 물체는 원래 그림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be absent) 재현을 통해 그림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be present).

스키너에 따르면, 기원 후 4세기경 라틴어 repraesentare의 의미가 확장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거나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물체의 외양을 재현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인격(person) 즉,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타인을 통해 재현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스키너에 따르면, 이러한 Representation이 정치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초 영국에서인데, 주로 영국혁명(the English Revolution, 1640~1660년) 전의 일이다. 의회파는 국회가 국민(the people)의 인격(person)을 재현(represent)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치교과서에서는 "국민의 인격을 재현한다"는 말을 흔히 "국민의 의지(public will)를 재현한다"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다. 왜냐면 인격체(person)만이 의지(will)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현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의 시작이다.

대의(혹은 재현)민주주의는, 국회가 가지는 통치권이, 독립된 인격성을 갖는 국민(the people)으로부터 위임(trust 혹은 transfer) 받은 것으로 여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재현되는 "공공의 의지" 혹은 "국민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공동체 혹은 국민 전체가 개인처럼 '독립된' 인격성을 갖는다"는 개념에 대해 살펴 보자. 여기서 국민을 일컬을 때 영어로 people이라 쓰지 않고

the people이라 쓴다. People은 다수의 모임을 일컫지만, the people은 추상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의 국민을 말한다. 이는 법인(corporation) 개념과 비슷하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법적 인격체로서,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와 독립된 자기 자신만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독립된 인격성을 갖는 공동체 혹은 국민전체를 정치학에서는 "(근대 서구) 국가(the (modern) state)"라 부른다. 여기서 "근대 서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국가가 독립된 인격성을 갖는다는 사고가 근대 서구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국가 혹은 공동체는 모순적인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국가는 국민 개개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민 개개인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법적 인격체로서, 다른 법적 인격체(기업 혹은 개인)와 마찬가지로 사적인(private)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개개 성원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혹은 국민의 독립된 인격체는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계약 관계"를 가능케 한다. 이 계약관계는 주식회사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인주식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은 그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법적 인격체인 것처럼, 국가의 개개 성원은 추상적 인격성을 갖는 국가(the state) 혹은 국민(the people) 혹은 공동체(the community)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계약에서 사장과 정부는 기업 혹은 추상적 공동체(국가)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표자(Representatives)에 불과하다.

국가와 그 구성원 사이의 대표적인 "계약관계"가 국가 부채, 즉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그 구성원이 채권자가 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관계에서 어떻게 국가가 독립적인 인격성을 갖는 지 살펴보자.

우선, 계약은 언제나 인격성을 갖는 존재끼리만 맺을 수 있기때문에, 국가가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와 그 구성원 개인들의 독립된 인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 부채의 채무자는 국가 구성원 개개인들의 채무가 아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인 세금을 냄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 부채의 변제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국가 부채 30조가 있다고 해서, 4천만 국민 개개인이 4천만 분의 30조원 만큼씩 부채를 지고 있다거나, 채권자가 각 개인들에게 그만큼 변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그 자체의 것이다. 여기서 국가라는 독립된 인격체가 독립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법인의 채무에 대해, 소유자인 주주들이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지 않고, 법인

그 자체가 채무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

다음은 "위임(trust 혹은 transfer)"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로크는 신탁(信託, trust)이라는 개념으로 위임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두 번의 신탁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권리를, 추상적 인격성을 갖는 공동체(the community) 혹은 국민(the people)에게 신탁(trust)한다. 둘째는, 공동체(the community) 혹은 국민(the people)은 국회(representatives)에게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신탁한다. 로크에 따르면, 이 두 번의 신탁 행위는 동시에 발생하는데, 투표 행위를 통해 대표자(representatives)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할 때이다.

지금까지 "공동체 혹은 국민의 인격성"과 "위임"이라는 개념이 "Representation(대의 혹은 재현)"의 개념의 핵심임을 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Representative Democracy(재현민주주의)란, 추상적 인격성을 갖는 국민(the people) 의지(will)를 정부와 국회라는 대표자(Representatives)가 재현(represent)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은 위임(Trust)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촛불집회에서 얘기되는 민주주의는 이러한 재현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촛불집회에서 대중은 자신의 요구가 국민 "다수"의 요구임을 강조한다. 즉, 촛불집회의 대중은, 정부가 재현해야 할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추상적 인격성을 갖는 국민(the people) 혹은 공동체(the community)의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서 대중은, 정부의 권력이 "위임"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는 "대리인(代理人)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법적 용어로서, 위임(委任, trust)과 대리(代理)는 매우 상이한 개념이다.

위임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금융 신탁이다. 신탁자가 돈을 신탁금융에 맡길 때 신탁자는 원금을 통제로 잃을 각오를 한다. 신탁한 이후, 신탁자는 금융전문가가 신탁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섭할 수 없다. 법적으로 신탁은 법적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여서, 그 돈이 더 이상 법적으로 신탁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임의 과정이 올바르고, 금융전문가가 "악의 없이" 그리고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신탁한 돈을 활용하는 한 신탁한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해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의 혹은 재현민주주의에서의 위임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정부 혹은 국회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危害)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하지 않는 한, 국민은 출판 및 결사의 자유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위임 기간 동안 정부가 위임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섭하거나,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위임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무기속위임(無羈束委任) 원칙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대표자들의 악의(惡意) 혹은 사적 이익 추구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정권퇴진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

대리(代理)는 위임과 매우 다르다. 경제적 대리 행위를 통해 이해해 보자. 경제적 대리행위에서는 법적 소유권이 대리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의 처분 권한이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政府)를 대리인(代理人)으로 이해했을 때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될 때 국민 다수가, 출판 및 결사의 자유를 통한 비판을 넘어, 정부 정책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3. 대의(Representation)의 문제점

재현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에 설명한 두 핵심 개념들과 관련된다. 우선 공공의 의지(Public Will)가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바꾸어 말하면, 추상적 인격성을 가진 공동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홉스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다. 홉스가 생각하기엔, 국민(people)은 이질적인 이해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단일성(unity)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래 국민은 추상적 인격성을 갖지 않고, 공공의 의지(the will of the people)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홉스는 국가(the state)는 단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어떻게 이질적인 요소의 모임인 국민(people)이 단일한 의지와 욕구를 갖는 국가(the state) 혹은 국민(the people)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를 홉스는 고민했다. 홉스는 Representation(대의 혹은 재현)의 마술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국민은 단일성을 획득하기 힘든 만큼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대표자(Representatives)는 한 사람 혹은 소수라 단일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통해, 즉 국민 개개인들이 대표자에게 결정권을 위임해서 대표자가 양심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찾게 함으로써 국가가 단일성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 이때 대표자가 결정한 공공의 의지(public will)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과 "공공의 의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대표자가 결정한 공공의 의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철회할 수 없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반드시 공동체의 "단일한 의지" 혹은 "공공의 의지"에 기초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통치였다. 다수가 통치하고 그것에 스스로 책임지는 통치체제였다. 여기에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달리, 행(行)하는 자와 의지(意志)하는 자의 구분 (혹은 권력의 행사자와 권력의 주체의 구분)이 없고, 단일한 의지를 갖는 국민(the People)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는 다양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단일한 의지와 욕구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가 똑같이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없는 매우 상이한 정치체제다. 왜냐하면, 두 민주주의에서 "민(民)"이 의미하는 것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의 근본적 질문에 답해보자. 과연 공공의 의지(Public Will)가 실제 존재하는가? 다수의 모임인 People로 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체를 갖는 the people이 실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부분(parts)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체를 갖는 전체(the whole)가 실제 존재하는가? 그러한 전체(the whole)가 "유기체적 전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 보자. 우리는 흔히 사회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다고 얘기한다. 기계에서 각 부분은 프로그래밍된 자기 고유의 기능만을 인지하고 수행한다. 하지만 유기체에서는 각 부분이 자기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모든 부분들의 목적과 의지를 인지한다. 그래서 유기체에서는 부분들이 같이 협력한다. 그리고 이 협력은 부분들이 홀로는 할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유기체에서의 협력은, 각 부분으로부터 독립된 전체라는 인격체와 각 부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협력은 부분들 사이의 협력이고 그 협력이 각

부분이 따르는 만들어 낼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협력은 부분들 사이의 협력, 특히 손과 뇌 사이의 협력이지, 손과 "몸 전체라는 부분과 독립된 인격체" 사이의 협력은 결코 아니다. 또한 유기체적 협력을 위해서 각 부분이 동일한 의지(public will)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각 부분들의 다양한 의지(will)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부분(parts)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체를 갖는 전체(the whole)는 "유기적 전체"와는 다른 무엇이다.

부분(parts)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체를 갖는 전체(the whole)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5천만 명이라고 하자.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인격체(persons)가 존재하겠는가? 근대서구 대의민주주의에서는 5천만 명에 한명을 더 추가해서 답할 것이다. the people로서의 민(民)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5천만 1명, 즉 부분(parts)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체를 갖는 전체(the whole)란, 부분들의 합이면서도 각 부분과 병렬적으로 등치되어 다른 인격체로 취급될 수 있어서 각 부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한 부분(a part)이 전체(the whole)와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전체 속에는 이미 이 한 부분이(the part)가 들어 있다. 그래서 국가가 나하고 계약할 경우, 어느 면에서는 내가 나하고 계약하는 꼴이다. 이러한 계약관계가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가 단순히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니라, 각 부분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인격체로 되어야 한다.

한 사회는 다른 사회에 대해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될 수 있다. 한 사회의 유기적 협력은 다른 사회로 하여금 그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도 각 부분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의 부분들에 대해 독립된 인격체로 취급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가 그 부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과 모순된다. 따라서, 부분(parts)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사적인 책임과 권리를 갖고 사적 개인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공적인 전체(the whole)라는 것은 허구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실재와 허구의 구분은 언제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하는 한 그 무엇이 실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마치 장자(莊子)의 나비꿈과 같다. 꿈 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 다닌 내가 실제로 나인지, 아니면 깨어난 후 그것을

기억하는 내가 실제로 나인지, 장자는 묻는다. 나비가 꿈이지만 꿈꾼 사람이 나비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경했다면, 나비는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적 효과를 발휘한다. 허구가 실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국채, 즉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국민 개개인이 채권자가 되는 관계에서, 국가가 어떻게 독립적 인격체로 상정되는지 살펴보았다. 사실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빚을 진다"거나 "주권자가 그 신하에게 빚을 진다"는 개념은, 북·서유럽의 게르만 계통의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게르만적 현상이다. 지금까지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나 중국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었다. 비(非)게르만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오히려 공동체에게 빚졌다는 의식을 갖는다. 공동체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는 왕이 유력한 재산가에게 자산을 헌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게르만 계통의 사회에서는 전쟁 상황이라도 왕의 이런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중세 말부터 왕은 전쟁 비용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이것이 게르만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권자(왕)의 빚(Sovereign Debt)라는 현상이다.

영국에서 17세기 말 명예혁명을 통해 주권자가 왕이 아니라 국민(the people)이 되면서 "왕의 빚"이 국가부채(public debt)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권자의 빚"의 특징을 크게 변화시킨다. 이전에 왕의 빚이었을 때는, 채무자 왕이 죽으면, 대부분의 다음 왕이 도덕적으로 갚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빚의 영속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통치자가 단순히 대표자(representatives)에 불과해지고, 특정 정부가 빌린 돈에 대해 차기 정부 또한 법적 의무를 지도록 강제되었다. 즉, 빚의 영속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빚의 영속성 속에서 추상적인 국민이라는 인격체가 존재하게 된다. 빚의 영속성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약속 때문에 허구인 "추상적 국민"이라는 인격체가 실재하게 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가 결정한 것이 과연 공공의 의지(public will)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국가(the state) 혹은 국민(the state)의 의지라는 것이, 실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의 의지대로 대중을 통치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공공의 의지라는 개념은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몇 해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이라크의 수많은 인명과 자산을 파괴한 전쟁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부시를

전쟁범으로 재판해야 할까? 부시는 자기 개인적 이해와 의지로 이라크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배제하고, 공공의 의지(public will) 혹은 국민의 의지 (the will of the people)를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국민 전체 (the people)를 전쟁범으로 재판해야 할까? 사실 단일한 의지를 갖는 미국 국민(the American people)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양심있는 미국인들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 대의 혹은 재현의 개념은, 행(行, act)하는 자와 의지(意志, will)하는 자를 구분한다. 즉 행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 이해를 배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대표자에 불과하며, 의지(意志)하는 자는 "추상적인" 인격체 (the people)일 뿐이다. 이러한 구분에서는 행(行)하는 자는 진정한 책임을 회피한다.

대의민주주의 혹은 재현민주주의의 또 다른 근본적 문제는 "위임"과 관련된 다. 로크에 의하면, 국회나 정부의 통치권은 국민 개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던 권리(특히 의사결정권, 처벌권)를 위임받은 것이다. 로크의 재산이론(the theory of property)은 위임(trust)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로크의 재산이론은 인간의 모든 속성들(attributes)을 - 예를 들어, 생명·자유·몸·권리 등 - 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한 자산으로 본다. 이것들은 자산이므로 다른 물적 자산처럼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가 다른 물적 자산처럼 개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인가와, 마치 다른 물적 자산처럼 소유자로부터 분리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옮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이다.

한 개인 'ㄱ'과 그의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의 예를 살펴보자. 'ㄱ'은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동시에 미성년의 자녀에 관한 의사결정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가 과연 '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소유물일까? 이 권리는 아버지와 미성년 아들과의 관계라는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ㄱ'이 이 관계성 밖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아니다. 또한 이 권리는 관계성에 귀착되어 있어서 이 관계를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계 밖으로 "이전(transfer)"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아버지 'ㄱ'의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이 재현(再現)할 수 없다.

정리하면, 책임, 의무 그리고 권리란,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한 개인 관계성 이전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아니고 따라서 "이전" 혹은 "위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장되는 권리의 위임이란 허구다.

다수결 투표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위임 방식은, 다수의 의지가 공공의 의지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공의 의지란 다수의 의지와는 다른 무엇이기 때문이다. 다수결 투표는 불가능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려고 고안된 변통수일 뿐이다. 다수결 투표 후에 대표자(Representatives)는 무기속위임(無羈束委任)원칙에 따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 의지를 공공의 의지(public will)로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정치학자 루소(1712~78)의 다음과 같은 "대의"제 비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대의(Representation)의 문화적 특수성

"위임" 혹은 "신탁"으로 번역되는 trust란 개념은 영미 문화권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다. F. Maitland라는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에 따르면, 신탁(trust)은, 유럽대륙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영국 고유의 법적, 문화적, 도덕적 개념이다.

몇몇 독자는 직관적으로 느꼈겠지만, 신탁이라는 개념은 독특한 자아관에 기초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신탁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배경은 로크의 재산이론(the theory of property)이다. 이 재산이론은 인간의 모든 속성들(attributes)을 개인이 고유하게 소유한 위임 가능한 자산(property)으로 본다.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자산화하는 것은, 그 자산을 소유하는 소유주체를 상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 몸(body)이 내 자산(property)이라고 가정해 보자. 영어로 표현하면 "I have a body"이다. 이때 "I"는 body를 소유한 소유주체다. 즉, body가 소유(have)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될 때, "I"라는 소유주체가 자연스레 전제되는 것이다. 이때 이 소유주체는 매우 추상적인 자아다. 즉, 그 소유주체는 소유주체라는 특질 말고는 다른 어떤 특질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특질이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로크는 이러한 추상적 자아를 person(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로크는 이렇게 말한다. "Every man has a property in his own person.(Second treaty of government, §27)" 번역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person) 안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이다.

이러한 추상적 자아로서의 person(인격)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제가 된다. 법 앞에 모든사람이 평등하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그 특질과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다. 이때 인간의 모든 특질을 자산화하여 만들어 지는 "추상적 자아로서의 person"은 이러한 동일성을 가능케 한다. 형식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하듯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 사람들이 모두 그 능력과 특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보통사람과 동일하게 법이 취급하면 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평등한 일이다. 진정한 평등은 (약자를 따뜻하게 돌보는) 불평등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사고를 정당화시키는 "추상적 자아로서의 person"개념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다.

이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람"이라고 흔히 번역되지만 매우 독특한 영국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그 독특함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person의 기원을 알아보자.

person은 라틴어 persona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고대 로마시대 persona는 가면 혹은 허구라는 의미로 쓰였다. 즉 연극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는데 이 가면을 일컬을 때 쓰였다. 이러한 용법은 현대에도 남아서 persona가 여전히 연극의 "등장인물 (Character)"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대 영어에서 person이 고대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쓴 가면이나 허구"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반대로 "실제 사람"을 뜻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person을 실제 사람의 주체(subject)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면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오래된 철학 논쟁의 주제다. 인격적 동일성(Personal Identity)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그것이다. 인격적 동일성이란,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격이 그 변화의 와중에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인격적 동일성이 존재한다는 사유가 팽배한 곳이 근대 서구문명, 특히 영국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팽배한 곳은 대표적으로 불교문명권이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는 五蘊皆空(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공(空)하다)라고 한다. 사람에게서는 "나"라는 인격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 혹은 인격적 동일성은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빚은 업의 결과이므로 참회와 수련을 통해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person이라는 인격적 동일성의 개념은 인류 보편적 개념이 아니다.

서구 유럽 문명을 특징지어주는 특수한 개념에 불과하다. (대승) 불교에서는 인격적 동일성이라는 허구적 믿음과 욕망이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폭력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어찌 보면 근대서구 문명의 자연과 사람에 대한 폭력성이 이러한 허구적인 믿음과 욕망과 관련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인격적 동일성 혹은 person이라는 개념이 영국에서 신탁이 발생하고 발달한 직접적 동기였다. 신탁의 첫 번째 근본적 동기는 신탁자의 의지(will)를 자신이 죽은 이후에까지 미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신탁자는 자신의 의지로 표현되는 "나"라는 인격적 동일성을 죽은 뒤에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신탁자는 자기가 축적한 자산이 후세들에 의해 임의대로 쓰여 소모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외에 쓰이거나, 여러 명에게 상속되어 작아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신탁자는 자산 소유권을 자손에게 상속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자손을 수혜자로 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던 것이다. 신탁의 두 번째 근본적 동기는 공동체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였다. 흔히 세금 포탈을 위해 신탁이 초기발생시점부터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중세에는 토지소유주가 직계 혹은 방계의 상속자 없이 죽은 경우, 토지가 왕에게 귀속되었다. 토지소유자나 영주는 이것을 막기 위해 죽기 전에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겨 왕의 토지로 되는 것을 막았다.

흔히 근대 정치사상가들은 왕을 폭압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들의 묘사가 많은 경우 과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주의 엔클로우저 운동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생계 수단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엔클로우저 운동을 불법화하려 했던 것도 왕이었고, 토지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빈민법을 제정하여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도 왕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왕들은 스스로를, 단순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여 신(神)과 매개하는 공인(公人)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산층 혹은 유력자들이 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한 광범위한 신탁은 개인주의의 표현이었다. 즉, 자산이 공동체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유하게 귀속된 것이라는 표현이었고, 더불어 그 자산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

전에 언급한 국채의 존재도 이러한 개인주의의 결과다. 중세 말 이탈리아 도시공화국은 국민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즉, 국채가 존재했다. 하지만, 공화국의 권리와 책임이 국민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화국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채권자는 공화국의 부유한 시민

에게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개인과 국가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의 일이다. 1689년 명예혁명의 권리헌장(the Bills of Rights)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침해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인은 비로소 국가가 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국가의 독립적 인격성의 기반이 된다.

서구의 인격적 동일성 혹은 person이라는 개념은, 개인을 인격체로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룹 혹은 공동체를 인격체로 이해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사실 인격적 동일성의 개념은 서구의 언어 구조, 서구 자연철학, 서구 인문철학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뉴턴의 "물질" 개념,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 영어 특유의 주어-술어 구조는 모두 이러한 인격적 동일성이라는 믿음체계가 강하게 반영된 것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뉴턴과 데카르트의 실체론 비판을 참조하면 좋겠다.

오토 기어크(Otto Gierke)라는 유명한 독일 법학자는 공동체 혹은 그룹 인격성이라는 사고는 매우 게르만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같은 게르만계통의 사회인 영국과 서유럽 대륙 국가(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 간에 차이가 있다. 서유럽 대륙에서는 그룹 인격성의 발전이 영국보다 늦었는데, 그 이유는 서유럽 대륙 국가들이 고대 로마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영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게르만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반면, 서유럽 대륙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룹 인격성 개념을 논할 때 Corpo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 Corporation의 의미에는 그룹 인격성이 허구라는 함의가 강하게 있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룹 인격성이, 그룹 그 자체가 고유하게 소유한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편의를 위해 국가가 부여해 주는 "허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적 이해를 위해 그룹 인격성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치 않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룹 인격성이 허구라는 이러한 사유는, 서유럽 대륙 국가들이 로마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져, 국가 및 그룹의 인격성 발전이 더더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영국에서는 게르만 특유의 그룹 인격성이 "trust(신탁)"라는 개념을 통해 발전한다. 영국에서는 근대 초기부터 정부나 국회를 trustees라고 불렀고, 영리 기업도 trusteeship로 여겨왔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trust(위임

혹은 신탁) 개념은 "그룹 인격성"을 가능하게 한다. 독립된 그룹 인격성이 가능하려면, 그룹의 독립된 의지(意志)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 Trust(신탁)은 행하는 자와 의지하는 자를 구분 (혹은 권력의 행사자와 권력의 주체의 구분)시킴으로써, 이것을 가능케 한다. 신탁은 수탁자에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인 혹은 국가라는 추상적 인격체의 의지를 재현할 것을 의무로 지우기 때문이다.

4. 결론

한국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은 대의민주주의 혹은 재현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유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법정스님의 책 표지 제목을 통해 비춰지는 "무소유"라는 사유는, 어떤 권리가 나의 고유한 자산이라는 사유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나"라는 고유한 실체란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와 관계성만이 실재한다고 믿었던 공동체 의식은, "나"의 권리를 먼저 찾는 권리 의식과는 매우 다르다.

"대리"라는 사유는 영미문화의 "위임"이라는 독특한 사유와는 매우 다르다. 지금까지 대중은 "대리(代理)"라는 사유에 익숙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금융과 서구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은 대중에게 "위임(委任, trust)"의 사유에 익숙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은 행하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구분될 수 있다는 사유에 익숙해 질 것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CEO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한국적 기업형태는 기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 위임행위인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했으니, 비록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해 위정자가 행동하더라도, 촛불집회에서 정권퇴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요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얘기된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사유 방식 모두 안에서 살고 있다. 이중생활이다. 위정자의 이중생활을 보자. 위정자는 한편으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서구적 사유 속에서 산다. 대중이 촛불집회에서 정권퇴진 요구를 하면 "위임"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난한다. 위정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유 속에서 산다. 서구적인 대의민주주의 사유방식에서 기본전제가 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6일 영국 BBC와 일본 교도통신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공동체적 사유는 촛불집회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제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는 두 가지 사유방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구인들보다 더 괴롭다. 이 괴로움이 더할수록 우리는 서구인처럼 되기를 갈구해 왔다. 온전한 서구인이 될 수 있다면 이 갈구가 정당화될 수도 있을 일이다.

촛불집회와 대의민주주의의 대립은 우리의 모순된 이중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생활을 덮고 과감히 본연의 내가 되려 할 때, 즉 촛불집회를 본연의 우리를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으로 긍정하고 우리의 독특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까지의 괴로움(苦)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참고 문헌>

- Cotterrell, R. (1987). "Power, Property and the Law of Trusts: A Partial Agenda for Critical Legal Scholarship." *Journal of Law and Society* 14(1): 77-90.
- Duff, P. W. (1971). *Personality in Roman Private Law*. New York, Augustus M. Kelley Publishers.
- Gierke, O. F. v. (1900).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bes, T. (1985). *Leviathan*. London, Penguin Books.
- Locke, J. (1690).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dianapolis;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Maitland, F. W. (2003). *Trust and Corporation. State, Trust, and Corporation*. D. Runci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inner, Q. (2005). "Hobbes on Representation."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3(2): 155-184.
- Whitehead, A. N. (1978).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New York, Free Press.
-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 사회계약론 ;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최석기 옮김. 서울 : 동서문화사, 2007
- 최장집 "촛불집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 시국대토론회 개최사 (2008. 6.16)
- 최훈, [중앙일보], 2008년 6월 30일, [월요 인터뷰]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 '승자 독식'이 문제